

# 평생교육원규정

기획위원회 통과일자 2016. 4. 21.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평생교육원은 “대구보건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원은 평생교육법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이념과 대구보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건학이념을 기본정신으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10)

**제2조의1(목표)** ①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아발전과 코칭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아실현을 도모한다.

②다양한 과정을 운영, 1인 다자격증 취득을 통하여 폭넓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③첨단 보건의료지식과 실습교육 교육을 통하여 글로벌 보건의료인재를 양성한다.

(조신설 2012.9.10)

**제3조(위치)** 본원의 사무실은 본 대학교 내에 둔다. (개정 2012.9.10)

**제4조(사업)** 본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①학생·학부모·교직원을 위한 교양증진 교육 (개정 2009.5.20, 2012.9.10)

②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개정 2012.9.10)

③평생교육과 관련된 지도자의 연수와 지도(개정 2012.9.10)

④지역주민을 위한 직업교육 (개정 2009.5.20)

⑤기타 평생교육 이념 구현에 관계되는 사업

## 제 2 장 조 직

**제5조(구성원)** ①원장은 일반직 부참사 이상 또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부원장 및 팀장과 센터장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5.20, 2012.9.10., 2016.2.23.)

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평생교육원을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5.20., 2016.2.23.)

③(삭제 2016.2.23.)

④필요시 교직원 중 부원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2.23.)

⑤직원은 제4조의 명시된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6.2.23.)

**제6조(교직원)** 본원은 필요한 교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평생교육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3.1)

**제7조(헬스매니지먼트센터설치)** 본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헬스매니지먼트센터를 설치 할 수 있으며, 헬스매니지먼트센터의 운영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개정 2013.3.1)

###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8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위원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5.20, 2012.9.10)

②위원장은 평생교육원 원장이 된다.

③당연직위원은 헬스매니지먼트센터장으로 하며, 간사위원은 평생교육팀장이 된다. (개정 2006.3.17, 2007.3.12, 2009.5.20, 2016.2.23.)

**제9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사업 계획과 평가 (개정 2012.9.10)
2. 예·결산 (개정 2012.9.10)
3. 설치과정 및 이에 관련한 제반 사항 (개정 2012.9.10)
4. 규정의 개정 및 폐지 (개정 2012.9.10)
5. 민간자겨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9.10)
6.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2.9.10)

**제11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간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 처리를 한다. (개정 2013.3.1)

③위원은 제10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12.9.10, 2013.3.1)

**제12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5.20)

**제13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중요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9.5.20)

**제14조(회계년도)** (삭제 2012.9.10)

## 제 4 장 교 육 과 정

**제15조(과정)** ①본원의 설치된 프로그램 운영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0)

1. 학점은행제 (신설 2012.9.10)
2. 일반과정 (신설 2012.9.10)
3. (삭제 2013.31)
4. 민간자격증 (신설 2012.9.10)
5. 기타 (신설 2012.9.10)

②제1항의 설치과정의 개발과 학습인원 및 제20조의 학습비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필요시 관찰청에 신고한다. (개정 2007.10.1, 2009.5.20, 2012.9.10, 2013.3.1)

**제15조의1(과정별 지침)** 필요시 각 교육과정별 운영관리 지침을 둘 수 있다. 단 학점은행제는 관련 법령과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 본원의 학사관리 지침을 따른다. (조신설 2012.9.10, 2013.3.1) (개정 2016.05.18)

**제16조(선발방법)** 본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9.10)

**제17조(등록시기)** 본원의 등록시기는 각 교육 과정별 일정에 따라 정한다.

**제18조(학습기간)** 본원의 주 학습일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단 학점은행제, 자격증 과정의 경우 관련법령이나 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9.10, 2013.3.1)

**제19조(수업일)** (삭제 2012.9.10)

**제20조(학습비)** ①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거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준용하여 [별표 3]에 따라 반환한다. 단, 학점은행제 수강료 반환 기준은 [별표 4]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07.5.2, 2009.5.20, 2010.5.28., 2016.05.18.)

③본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학습자에 대해 [별표 2]와 같이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위탁교육과정의 경우 위탁운영계약서에 할인율을 명시하며 헬스매니지먼트센터 회원의 경우 총장의 별도 승인을 받는다. (신설 2007.10.1, 2009.5.20)

**제21조(학습년한)** 본원 학습년한은 1학기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서 학습년한을 별도로 정할수 있다.

**제22조(수료 및 수료증 교부)** ①본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설치과정의 교과목을 80%이상 이수한자로 한다. (개정 2009.5.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6.4.18)

③ (삭제 2012.9.10)

**제23조(지원자격)** 본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특별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제 5 장 학점은행제 (개정 2016.05.18)

**제24조(근거)** 본원의 학점은행제 과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한다. (신설 2006.4.18, 2009.5.20, 2012.9.10) (개정 2016.05.18.)

**제25조(학습과목 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의 기준을 적용하여 본 원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으로 개설한다. (신설 2006.4.18), (개정 2009.5.20, 2012.9.10., 2016.05.18)

②(삭제 2016.05.18)

**제26조(학사운영)** ①본 원 학점은행제 학사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및 평가인정 학습 과정 운영지침에 준용한다. (개정 2012.9.10. 2016.05.18)

②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본 대학 학칙에 준용한다. (개정 2012.9.10., 2016.05.18.)

**제27조(장학금)**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5.18)

**제28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본원 학점은행제 학사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6.05.18)

②(삭제 2016.05.18)

## 제 6 장 강 사 료 (개정 2016.05.18)

**제29조(강사료)** 본원의 시간당 강사료 정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05.18)

**제30조(특강료, 기타수당 등)** ①초빙강사(국내, 국외) 특강료는 규정된 강의료의 2배액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특강료를 증액 지불할 수 있다. (개정 2009.5.20., 2016.05.18)

②기타 과정운영에 발생하는 수당 등은 총장의 결재를 득한다. (신설 2016.05.18)

## 제 7 장 수강생 활동 및 포상 (개정 2016.05.18)

**제31조(자치회)** ①본원의 학습자는 수강 목적에 따른 자치회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다. 단, 정치적, 반사회적, 비윤리적 활동은 금한다. (개정 2016.05.18.)

②학습자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는 단체의 대표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05.18)

**제32조(포상)** 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포상 할 수 있다. (신설 2016.4.1.) (개정 2016.05.18)

## 제 8 장 공개 강좌 (개정 2016.05.18)

**제33조(공개 강좌)** ①본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공개 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장소, 내용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 마다 원장이 이를 정한다. (조신설 2016.5.18.)

## 제 9 장 회 계 (신설 2016.4.1.) (개정 2016.05.18)

**제34조(회계 연도)** 본원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신설 2016.5.18.)

**제35조(예산 및 사업계획)** 원장은 본원의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5.18.)

**제36조(회계 집행)** 본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원에서 관장한다. 장소, 내용에 관한 사항은 개강 시 마다 원장이 이를 정한다. (신설 2016.5.18.)

## 제 10 장 기 타 (신설 2016.5.18.)

**제37조(인센티브 지급)** 헬스매니지먼트센터 교직원들에게 총장의 승인을 받고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5.18.)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규정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규정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2. 이 규정 이전에 임명된 센터장은 이 규정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삭제 2007.5.2)

---



[별표 2] 평생교육원 학습비 할인율 (신설 2007.10.1) (개정 2009.5.20)

구분	적 용 대 상	할인율
1	본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20%
2	본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의 직계 가족	15%
3	본대학 교직원 및 그 직계 가족 (단, 겸임교수, 외래강사의 경우 본인만 해당)	20%
4	겸임교수, 외래강사의 그 직계 가족	10%
5	본원의 수강경력이 있는 자 (단, 일부 강좌는 제외)	20%
6	최초 수강자의 경우 2개 강좌 동시 수강 시 (본인이 선택한 1개 강좌만 해당) (단, 일부 강좌는 제외)	20%
7	본대학 교직원 및 재학생 소개로 수강시	10%
8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0%

[별표 3] 평생교육원 수강료 환불금액 산출표 (신설 2009.5.20)

(개정 2010.5.28., 2016.2.23. 2016.05.18 )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제1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4] 학점은행제 수강료 환불금액 산출표 (신설 2006.5.18)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과오납의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 할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수업 시작일 전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경과	반환하지 않음
비고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학습자의 귀책 사유로 수업에 불참했을 경우는 전체 강의가 제공되었으므로 수업시간 경과로 계산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7.10.1, 2009.5.20)

평생0000-000호

## 수료증

성 명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0000년 00월 00일

교 육 과 정 : ○○○

교 육 기 간 : 0000.00.00 ~ 0000.00.00 (00주)

위 사람은 상기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구보건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원장 ○○○ (인)

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남 성 희(인)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09.5.20) (개정 2012.9.10)

## 자 격 증

3×4  
증명사진

자격종목 및 등급 :

자 격 증 번 호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근거 : 민간자격증관리·운영규정 제5장 제21조

합격년월일 :

교부년월일 :

대구보건대학교 총 장 남 성 희

자격증서  
ABCDEFGG

성명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123456-1234567

위 사람은 본 대학 평생교육원 ○○과정을 이수하  
여  
그 활동능력이 인정되는 바 이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발급승인번호  
평생0000-000호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남 성 희(인)